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증 신설 등〉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43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2. 27.
- (3) 회 부 일 : 2024. 12.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4 신설 및 제71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발달재활사를 추가하고, 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국가시험 실시 및 자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4 신설 및 제71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u>장애인재활상담사</u> ,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 ----- ----- <u>장애인재활상담사, 발달재활사</u> ----- ----- ----- -----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발달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발달재활사”라 한다)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u>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받은 자 ②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 발달재활사 자격은 의사소통, 심리정서,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분야별로 구분한다.

현행	개정안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 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밖에 자격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 1의3. (생략)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 --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은 제72조의4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자격취소) -----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2.·3. (생략)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1의3. (생략) <u><신 설></u> 2. (생략)	<u>1의4. 제7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u> 2.·3. (현행과 같음) 제77조(자격정지) ----- -----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발달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u> 2.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명시하고 있고,¹⁾

1)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의지·보조기 기사(제72조)와 언어재활사(제72조의2), 장애인재활상담사(제72조의3)의 경우는 이들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도 각각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조문).

-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는 국가자격인데 비해,
- 점역·교정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관리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국가공인임.²⁾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현황>

구분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보유자 수 (‘24년 말 기준)	1,590명	1급 5,566명 2급 15,580명	1급 3,437명 2급 1,848명 3급 88명	2,032명	1급 218명 2급 238명 3급 1,244명
	합계 1,590명	합계 21,146명	합계 5,373명	합계 2,032명	합계 1,700명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장애인복지법」 제71조
국가자격 여부	국가자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공인
주 활동 영역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기관 등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기관, 언어재활을 실시하는 민간(사설)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수어통역센터, 종합병원 등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발달재활사를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공 인력에 대해 의사소통, 심리정서, 감각운동 등 각 분야별로 국가시험을 실시하여,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관리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공
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참고자료 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첫째, 발달재활 분야가 자격 관련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국가자격 신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격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
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
야,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등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
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둘째, 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및 국가시험 실시의 기준이 되는 발달재활 분야 명칭에 대한 현업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함.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는 총 10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언어재활 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을 교부 받은 ‘언어재활사’가 제공하고, 나머지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등 9가지 영역은 각 서비스 영역별 교과목 이수자로서 별도의 자격증 없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고자료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영역별 서비스>

제공인력 유형		서비스 영역	인원(명) ('24년 말 기준)
언어재활사		언어재활	1급 5,566 2급 15,580
영역별 자격인정자 * 영역별로 자격을 인정함	청능재활	청능재활	327
	미술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4,579
	음악재활	음악재활	1,796
	행동발달재활	행동발달재활	790
	놀이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	3,202
	재활심리	재활심리	646
	심리운동	심리운동	990
	감각발달재활	감각발달재활	4,159
	운동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652
	영역별 자격인정자 합계		17,141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서는 발달재활사의 자격 종류를 ‘의사소통, 심리정서, 감각운동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영역과는 일

치하지 않아, 발달재활사 자격 취득 후,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어떤 영역인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의사소통 분야는 기존 언어재활사의 서비스 영역과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셋째, 발달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발달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발달재활사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설립 규정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에는 관련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편, 개정안에서는 발달재활사 자격요건에 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격대학 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에 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자격요건을 인정해오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사회복지사 2급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참고로,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화를 통해 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10개의 영역별로 활동하고 있어, 이를 ‘발달재활사’라는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이를 대체하여 자격을 신설·운영하는 경우 언어재활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존 수행인력과의 영역 및 서비스 내용이 중첩됨.

- 아울러 ‘발달재활사’는 아직 별도의 학제, 학회, 민간자격 등이 없어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제공인력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인력 교육, 제공기관 품질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 ②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③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

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 장애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 (서비스 영역)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행동발달, 놀이심리, 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 운동발달 등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제공기관에서 1:1 서비스 제공 원칙
 -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 (제공기관) 민간(시설)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2,615개소('23년 말 기준)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88,415	94,204	99,857	127,032	138,288
이용인원	78,782	84,411	91,044	97,469	산출중

* 국비(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에 한함

<참고자료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등>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하생략.

[별표 1]

가. 배치기준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현재 언어재활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